



인도, 술 관련
주세 벌 제한 규정
19년 7/16 기준

[인도] 주류 (술) 관련 주 (州) 별 제한 규정 - 19년 7/16 현재

- 인도는 주류와 관련된 법규가 엄격하고 이의 보관이나 음용,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많은 규제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주류와 관련된 정책은 각 주별로 차이가 있고, 국경일, 종교 기념일, 선거일 등은 공통적으로 금주일 (Dry Day)로 지정되어 호텔 및 음식점에서도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.
- 특히,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소주와 같은 외국 주류(Foreign liquor*)를 집에 보관하거나, 집 또는 식당 등에서 이를 주문하여 음용**할 때에도 주정부로부터 허가(Bombay Prohibition Act, 1949 part6, Permits for possession, use and consumption of Foreign liquor)를 받아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에 적발될 시에는 자유형(징역/금고) 그리고/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 - * Foreign liquor : 외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주류
 - ** 알코올 도수 5도 이하의 주류(mild beer and mild liquor)는 21세 이상일 경우 허가없이 구입 및 보관, 음용 가능 (Wardha District 제외)
- 또한, 상기의 법률에 따르면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주류를 다른 주로 반출입 할 때에도 제한 수량이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거나 타 주로 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출처 : 주 뭄바이 한국 영사관 (190716)

마하라슈트라주 : Bombay Prohibition Act, 1949 Part 6

○ 개인

▲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

- 위반시 1만루피 벌금 또는 6개월 구금 또는 둘다 가능

▲ 술 구입, 운송, 집에 보관, 음용 시 허가 (permit)가 필요

- 임시 거주자 허가 (Temporary Resident's permit)
 - 유효기간 : 최대 24개월
 - 허용량(1달) : 맥주 (650ml) 24병 또는 와인(750ml) 12병 또는 양주(750ml) 6병
- 방문자 허가 (Visitor's permit) - 1주일 이하의 경우
 - 유효기간 : 1회 최대 1주일
 - 허용량 (1주일) : 맥주(650ml) 4병 또는 와인(750ml) 2병 또는 양주(750ml) 1병

• 여행자 허가 (Tourist's permit)

- 유효기간 : 최대 1개월
- 허용량(1달간) : 맥주(650ml) 24병 또는 와인(750ml) 12병 또는 양주(750ml) 6병

• 1일 허가 (One day permit) - 일몰 전까지

- 대상 : 25세 이상
- 허용량 : 맥주(650ml) 4병 또는 와인(750ml) 2병 또는 양주(750ml) 1병
- 허가 수수료 : 외국 주류 5루피, 자국 주류 2루피

-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자유형 (징역 · 금고) 또는 5천 루피 벌금(병과 가능)

- 허가 수수료 : 1년 100루피, 영구적인 허가 1천 루피(온라인 신청 가능)

▲ 술 배달 금지

-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자유형 (징역 · 금고) 또는 5천 루피 벌금(병과 가능)

○ 레스토랑 및 게스트하우스

- ▲ 식당,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허가 (License)가 반드시 필요
- ▲ 허가비용은 도시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짐
- ▲ 위반 시 5년 이하의 자유형 (징역 · 금고) 또는 5만 루피 벌금

구자라트 주 : Gujarat Prohibition Act, 1949

- 술 구입, 보관, 판매, 소비 불법
 - 위반시 최대 5백 루피 벌금 또는 최대 10년 구금 가능
- 주류 허가증은 외국인이나 구자라트 주 이외 지역에 사는 방문객에게 발급 가능
 - 외국인 허용량(1달간) : 맥주 48병, 와인 8병, 양주 4병
 - 타지역 방문객 허용량(1달간) : 1주일에 750ml 1병, 맥주캔 10개
- 구자라트주 인도인은 의사가 발행한 의료 목적 증명서가 있을 경우 허가 가능

마디아 프라데쉬 주 : The M.P. Excise Act, 1915

- 연봉 100만 루피 이상인 사람의 경우 주류 허가 가능
 - 허가 수수료 : 연 1만 루피
 - 허용량 : 100개(100 liquor bottles)

○ 텔랑가나 주 : The Telangana Excise Act, 1968

- 허가증에 따른 구입량 : 맥주 12병 또는 인도산 및 수입 양주 총 5.6리터
- 주내에서만 주류 구매 가능, 가정에서만 소비 가능
- 위반시 벌금 5천~2만 루피 및 6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

출처 : 주 뭄바이 한국 영사관 (190716)

남인도내 주간 이동시 주류 소지량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

인도 내에서 다른 주로 이동 시 주마다 규정이 약간 다르긴 하나 대체로 1리터 이상의 주류 소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할 시 그 양과 종류에 따라 벌금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. 이와 관련 최근 당국 관할 내 우리 국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 많은 양의 주류를 싣고 주(States) 경계를 넘어 이동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, 교민들께서 유념하셔야 할 주류 관련 규정을 아래 공지하니 숙지하시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개인이 허가 없이 다른 주로 주류를 반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각 주법에 따라 처벌(금고 또는 벌금) 받게 됩니다.
 - 주마다 규정이 상이하지만 각 주간 이동 시 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1리터 이상은 처벌 대상이 되오니 이를 초과하여 소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.

2. 주류 판매, 유통, 주세 등 주류 관련 정책은 주정부 고유 권한으로서 주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하며, 주류 관련 주요 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특정 주에서 구매한 주류는 그 주에서만 소비하고 주류는 가정내에 보관해야 합니다.
 -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최대 2리터입니다.
 - 허가 없이 호텔, 식당, 사적 행사 등에서 술 판매 및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.
 - 일부 국경일, 종교 관련 기념일, 선거일 등은 금주일(Dry Days)로 지정되어 있어 호텔 및 음식점에서도 술 판매가 금지됩니다.
3. 또한, 규정상 각 주마다 가정내 주류 보유량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타밀나두주

- 허용량 : △양주(750ml) 12병, △맥주(650ml) 12병, △타밀나두 내 구매 와인 12병
- 위반 시 1년 구금 또는 벌금(동시 처벌 가능)

○ 안드라 프라데시주

- 허용량 : △맥주 12병, △인도산 및 수입 양주 총 5.6리터
- 안드라 프라데시주 내에서만 주류 구매 가능하고 가정에서만 소비 가능
- 위반 시 6개월-3년 구금 및 5,000-20,000루피 벌금

○ 카르나타카주

- 허용량 : △국산 맥주 18.2리터, △수입 양주 9.1리터, △강화 와인(Fortified Wine) 4.5리터, △와인 9리터, △카르나타카 산 양주 2.3리터
- 위반 시 4년 이하 구금 및 50,000루피 이하 벌금

○ 케랄라주

- 허용량 : 인도산 양주 3리터 이내 /끝/

출처 : 주 첸나이 한국 영사관 (190110)

[공지] 여행 직거래 플랫폼 '여행거래소' 안드로이드용 (갤럭시 핸드폰) 앱 설치 안내



'여행거래소' 검색 후 설치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
'아이폰'용은 없어요 (개발하지 않음)

www.GV10.com 참고